

보도시점 2023. 11. 12.(일) 12:00 / 배포 2023. 11. 10.(금) 08:30
< 11. 13.(월) 조간 >

'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 공개

- 채무보증 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2.3% 감소 -
-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최초 제공 -
- TRS 거래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3 수준 -

※ 주말 엠바고 주의 : 11월 12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2023. 5. 1.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1조1,150억 원) 대비 6,945억 원 감소(△62.3%)하였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005억 원(△72.7%) 감소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569억 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발생하여 60억 원(4.0%) 증가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됨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미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처음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전년도에 이어 실시했다. 금년도(2023. 5. 1. 기준)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 원으로, 지난해(2022. 5. 1. 기준, 5조601억 원) 대비 약 1/3 정도(△33.4%, △1조6,876억 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2천억 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1조8,876억 원)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20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	책임자	과 장	홍형주 (044-200-4842)
		담당자	사무관	안영철 (044-200-4847)
			조사관	김재민 (044-200-4858)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1. 전체 채무보증 현황

□ '23. 5. 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48개) 전체의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22년 대비 62.3% 감소했다.

*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 중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 올해 채무보증금액(48개 집단 중 9개 집단, 4,205억 원)은 지난해(47개 집단 중 10개 집단, 1조1,150억 원) 대비 6,945억 원 순감했다.

-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감소한 반면,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321억 원이 증가했다.

【 전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개, 건, 억 원)

2022.5.1. 기준			2023.5.1. 기준			증감		
집단수*	건수	금액	집단수*	건수	금액	계	연속 지정	신규 지정
47(10)	220	11,150	48(9)	27	4,205	△6,945	△8,266	+1,321

* ()안의 숫자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출집단 수를 나타냄

2.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제도 개요 】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 (제한대상 채무보증) 상출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신규 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SOC, 해외건설, 수출입 제작 금융 등)와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제한대상 채무보증〉

□ (현황)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 (9,641억 원) 대비 7,005억 원(△72.7%) 감소했다.

○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에서 8,115억 원을 해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에서 1,110억 원이 증가했다.

【상출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기업집단	2022.5.1. 기준	2022.5.1. ~ 2023.4.30.			2023.5.1. 기준
			감소액	증가액	증감율	
연속 지정	에스케이	-	-	120 ¹⁾	-	120
	중흥건설	806	△743	-	△92.2	63
	SM	2,731	△2,731	-	△100.0	-
	셀트리온	676	△676	-	△100.0	-
	호반건설	3,194	△3,194	-	△100.0	-
	태영	592	△214	-	△36.1	378
	세아	696	△546	-	△78.4	150
	이랜드	863	△48	-	△5.6	815
	한국타이어	83	△83	-	△100.0	-
	소계	9,641	△8,235	120	△84.2	1,526
신규 지정	장금상선	-	-	630	-	630
	쿠팡	-	-	480	-	480
	소계	-	-	1,110	-	1,110
합 계		9,641	△8,235	1,230	△72.7	2,636

1)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하여 발생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집단이 채무 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의무 유예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현황)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569억 원(4개 집단)으로 사유는 SOC(67.4%), 수출입 제작 금융(32.6%) 순으로 확인된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2023.5.1. 기준, 단위: 억 원, %)

제한제외사유	SOC(사회간접자본) ¹⁾	수출입 제작 금융 ²⁾	계
금 액	1,058	511	1,569
비 중	67.4	32.6	100.0
해당 기업집단	케이씨씨, 태영	지에스, 장금상선	-

1) (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A)에 출자한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A)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케이씨씨건설 → (피보증)미래㈜], [(보증)㈜태영건설 → (피보증)㈜인제스피디움]

2) (수출입 제작 금융) 수출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 제공을 하는 계열회사가 한국수출입 은행으로부터 받은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지에스글로벌 → (피보증)㈜지에스엔텍, (보증)장금상선㈜ → (피보증)장금마리타임㈜]

II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례 분석

1. 현황

□ (변동추이) 지난 10년간('14년~'23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014년 6,075억 원(8개 집단)에서 2023년 1,569억 원(4개 집단)으로 감소했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있었던 집단은 총 13개*(중복 제외)이며, 공기업집단(인천국제공항공사)을 제외하면 12개이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에스케이, 지에스, 한진, DL(舊 대림), 두산, 효성, 케이씨씨, 장금상선,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한솔,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수 및 금액의 변동 추이 】

(각 연도별 지정일 기준, 단위: 억 원, 개)

구분	'14년	'15년	'16년 ¹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제한제외대상 보증금액	6,075	4,628	3,105	1,689	1,422	975	857	687	1,509	1,569
(증감율)	-	△24%	△33%	△46%	△16%	△31%	△12%	△20%	+120%	+4%
기업집단수	8	7	4	4	5	4	3	4	3	4
신규지정	-	-	-	1	1	-	-	-	1	1
연속지정	8	7	4	3	4	4	3	4	2	3

1」 2016년의 경우 2016.9.30. 기준(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하 같음): 상출집단 지정 기준 변경 (5조 원→ 10조 원) 및 공기업집단 제외

□ (사유) 지난 10년간 제한제외 사유는 민간투자사업(SOC)(8개 집단), 해외 건설 등(5개 집단), 수출입 제작 금융(2개 집단), 산업합리화(1개 집단) 순이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및 제외 사유 】

(단위: 억 원, 개)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체	6,075	4,628	3,105	1,689	1,422	975	857	687	1,509	1,569
집단수	8	7	4	4	5	4	3	4	3	4
민간투자사업	483	514	-	375	352	328	304	315	1,149	1,058
	지에스, 코오롱, 한솔 인천국제공항공사, DL(舊 대림)	케이씨씨 태영	-	-	-	-	-	에스케이	태영	
해외건설 등	1,122	778	584	178	557	287	193	12	-	-
	두산	효성	-	코오롱	-	-	-	-	-	-
	한솔	-	-	오씨아이	-	-	-	-	-	-
수출입 제작 금융	-	-	684	513	513	360	360	360	360	511
	-	-	-	-	-	-	-	-	-	장금상선
산업합리화	4,470	3,336	1,837	623	-	-	-	-	-	-
	한진	-	-	-	-	-	-	-	-	-

2. 주요 사례 분석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총 17건 중 16건) 민간투자사업(SOC)(9건), 해외건설 등(5건), 수출입 제작 금융(2건)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1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산업합리화)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주요 사례 분석 】

구분	주요 사례	사례 분석
민간투자사업 (SOC) 관련 보증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에 제공한 여신에 대한 보증 ▶ 교육청이 고시한 학교설립 사업을 수행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에 제공한 여신에 대한 보증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에 제공한 여신에 대한 보증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SOC 법인)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해외건설 등 관련 보증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 계열회사가 수주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보증 ▶ 계열회사가 해외에서 산업용보일러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보증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당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 공사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수보증 등에 대한 보증
수출입제작 금융 관련 보증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 계열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출촉진자금대출 · 수출성장자금대출 · 수출이행자금대출 · 수입기반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당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1항제1호 · 제2호에 따라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산업합리화 관련 보증 (법 제24조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운사 인수 및 그 회사 채무 등의 상환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보증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Ⅲ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지난해 상당 규모('18.1월~'22.6월, 6.1조 원*)의 TRS** 거래가 확인됨에 따라 그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18.1월부터 '22.6월까지 체결된 거래로서 그 기간 동안 만료된 TRS 금액을 포함

**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

○ 48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23. 5. 1. 기준 유지 중인 TRS의 거래규모, 건수 등 현황을 분석했다.

□ (거래규모) 6개 상출집단 소속회사(14개)에서 총 47건(3조3,725억 원)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2.5.1. 이후 신규 체결된 TRS 계약금액은 2,000억 원(1건, 5.9%)이며, 기존 계약에 따라 유지 중인 거래금액은 3조1,725억 원(46건, 94.1%)이다.

※ '23. 5. 1. 기준 유지 중인 47개 계약의 평균 계약기간: 1,229일(약 3년 4개월)

○ 지난해('22.5.1.) 기준 TRS 거래규모(9개 상출집단, 5조601억 원)보다 1조 6,876억 원(△33.4%) 감소했다.

- 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5,237억 원)과 비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8,488억 원)은 지난해 대비 각각 1조495억 원(△40.8%), 6,381억 원(△25.7%) 감소했다.

- 거래규모 감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1조7,376억 원), 만기 전 정산(1,500억 원) 등 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 상출집단의 유지 중인 총수익스왑(TRS) 거래 현황 】

(매년 지정일(5.1.) 기준, 단위: 건, 억 원, %)

구 분		계열사 간 거래 ¹⁾		비계열사 간 거래		전 체	
		건수 ²⁾	금액 ³⁾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년	합계	15	25,732	38	24,869	53	50,601
	(비중)	28.3	50.9	71.7	49.1	100	100
2023년	합계	13	15,237	34	18,488	47	33,725
	(비중)	27.7	45.2	72.3	54.8	100	100

1) 계열회사간 TRS 거래: TRS 거래구조 내 거래당사자(기초자산발행자, 총수익매수자, 총수익 매도자 등) 중에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 거래건수: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이 별도의 SPC를 설립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여 기초자산 수와 일치하지 않음

3) 거래금액: TRS 거래의 계약금액(기초자산의 명목금액 또는 보장금액)

□ (기초자산) TRS 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주식, 채권 관련 TRS 거래가 많고, 비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수익증권 관련 TRS 거래가 높은 비중(64.9%)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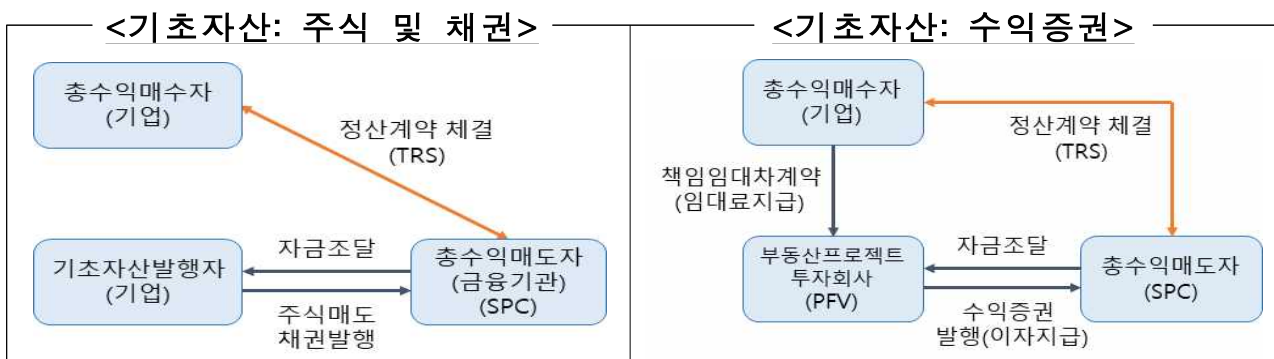
【 상출집단의 기초자산별 총수익스왑(TRS) 현황 】

(2023. 5. 1. 기준, 단위: 건, 억 원)

기초자산	계열사 간 거래		비계열사 간 거래		전 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식	7	11,067	3	3,850	10	14,917
채권	6	4,170	6	2,634	12	6,804
수익증권	-	-	25	12,004	25	12,004
합계	13	15,237	34	18,488	47	33,725

【 TRS 거래구조 (예시) 】

- ▶ (주식·채권) ①기초자산발행자는 총수익매도자에게 주식을 매각(채권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②총수익매수자와 총수익매도자는 TRS 계약 만료 시점의 주식 가격(채권 가격)과 TRS 계약상 보장금액 간 차액을 정산
- ▶ (수익증권) ①기초자산발행자(PFV 등)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 수익증권을 총수익매도자에게 발행하고, 총수익매도자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자금을 조달
②총수익매수자와 총수익매도자는 TRS 계약 만료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TRS 계약상 보장금액 간 차액을 정산



□ (시장감시) 상출집단의 TRS 거래는 정기보고서(사업·반기보고서) 등으로 대부분* 공시되어 시장감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미공시된 건(2건)은 원계약 종료 후 연장된 건으로 연장계약 기간이 단기(1개월)임에 따라 정기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전에 이미 종료되어 미공시(연장계약 이전의 원계약은 정기보고서상 공시됨)

IV

평가 및 향후계획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채무보증 규모는 기존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 ('19년) 0.11조→('20년) 0.09조→('21년) 1.16조→('22년) 1.12조→('23년) 0.42조

- 다만, 연속 지정집단(45개, 2,884억 원)의 경우 지난해(1조1,150억 원) 보다 채무보증 금액이 크게 감소(△8,266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미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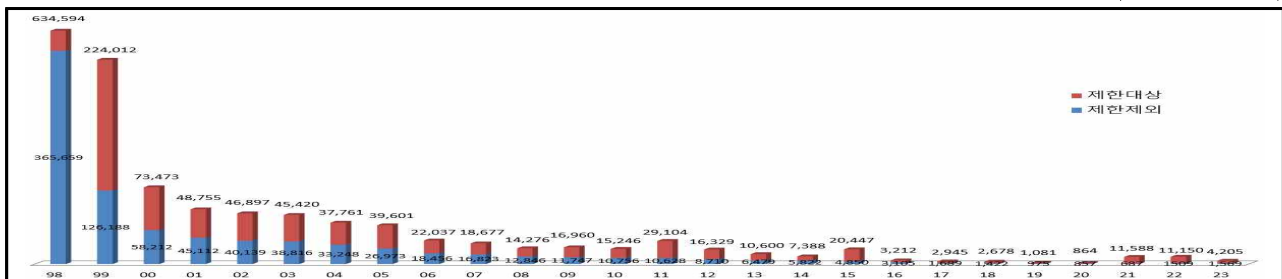
- 금년도 TRS 거래규모(3조3,725억 원)는 지난해(5조601억 원) 대비 약 1/3 정도(△33.4%, △1조6,876억 원) 감소했다.

- 이는 신규 계약금액(2천억 원)은 미미한 반면, 다수 거래가 계약종료(1조8,876억 원)된 데 기인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98년 ~ '23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주)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그리고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 지정으로 증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별첨: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결과